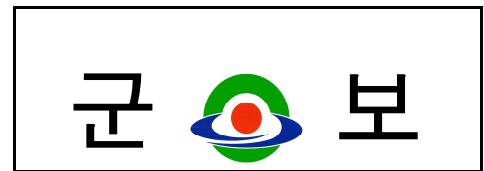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23호 2020. 3. 16.(월)

선 람	기 관 의 장

예 규

- 예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예천군 예규 제2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3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예규 제21호

예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천군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체육관련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해당 읍·면을 말한다. 다만, 별도

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서로 한다.

제3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설치부서가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등 개별법에 따라 이용 및 개발이 제한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보수 및 유지 위주로 관리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설치예정 장소의 읍·면장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문 게시)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
·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및 대장작성) ①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총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3.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변경 현황을 수시 또는 매년 말까지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설치부서는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하였을 경우 총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조치) 군수 또는 읍·면장은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복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 표]

관리자 정보 표시문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서식)

					관리번호		관리부서-00리-읍면1			
위 치							총괄부서		체육사업소	
유 형		ex) 경로당					설치부서			
설치기구		총 () 종 / ()점					관리부서		해당읍면	
설치일자							설치면적		㎡	
관 리 실 태										
기 구 명		관리상태				보수현황		비 고		
		양호	보통	불량	기타	일자	내용			
ex) 허리돌리기			√							
현장사진										
※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예천군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제2조)

- 총괄·설치부서 등을 지정함에 따라 관련 부서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함.

나.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 및 관리방법 규정 (제3조 ~ 제7조)

- 야외운동기구 설치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정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함
- 타 부서 설치 완료 후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함으로써 관내 설치 야외운동기구의 총괄적인 현황 파악

다.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 (제8조)

- 의무 가입 규정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함